

# 도호쿠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재해 발생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리상의 조치 등에 대하여

2011년 3월 16일 현재

2011년 도호쿠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에 따라 특정 비상재해 피해자의 권리·이익 보전 등을 꾀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96년 법률 제85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법무성 고시(2011년 3월 16일 법무성 고시 제123호)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일이 연장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대상자

2011년 도호쿠지방 태평양 지진(이하 ‘본 지진’이라 한다) 발생 시점에 아래의 세가지 모두에 해당하신 분

가.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고 계신 분

나. 체류기간이 2011년 8월 30일에 만료하는 분

다. ‘아오모리현의 구역, 이와테현의 구역, 미야기현의 구역, 후쿠시마현의 구역 또는 이바라키현의 구역(이하 ‘특정구역’이라 한다)에 계셨던 분’ 또는 ‘외국인등록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등록원표에 등록된 거주지가 특정구역 내에 있는 분’

또한 본 지진 발생 시점에 체류기간 특례(주)에 의한 체류 중이었던 경우 혹은 외국인등록법 상의 거주지가 특정구역 내에 있는 분으로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 출국한 상태였던 분이 2011년 8월 30일까지 재입국한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주) 체류기간 특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0조 제5항(같은 법 제21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또는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외국인이 가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체류가 인정되는 것.

## (2) 조치

상기 (1)에 의해 대상이 되는 분은, 본인이 가진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 만료일이 연장되어 2011년 8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취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1년 8월 31일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그때까지는 체류기간 갱신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불법잔류가 되지 않으며 적법하게 출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장조치의 대상이 된 원래의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 출국할 경우에는 연장조치의 대상자임을 출국심사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국심사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 앞으로 일본에서 출국하여 2011년 8월 31일까지 사이에 다시 입국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신청을 하면 동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이미 받은 자격 외 활동 허가의 허가기한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라. 2011년 8월 31일을 지나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또는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2011년 8월 31일까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또는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마. 또한 2011년 8월 31일까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또는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하신 분의 체류기간 특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0조 제5항(제21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에 대해서는, 같은 날까지 이들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2011년 9월 1일부터 이들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질 때 또는 2개월을 경과하는 날 중에서 이른 날까지 계속 해당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 (3) 조치 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인

현재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동 증명서를 상기 (2)의 신청 등을 하실 때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분 및 외국인 등록증명서 상의 거주지가 특정지역 내가 아닌 분은 서면 또는 구두로, 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구역에 계셨다는 사실 또는 거주지를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상기 (2)의 신청 등을 하실 때 담당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의 사항 외에도 외국인등록법에서 정하는 신청 등에 대해서는 ‘특정 비상재해 피해자의 권리·이익 보전 등을 꾀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피해자 면책 규정이 적용됩니다.